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5. 4. 25
- 제 안 자 : 영등포구청장

개정(제안) 이유

-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영등포구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 요 골 자

- 조례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안 제명).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로 상위법명 변경(안 제1조)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안 제3조)

□ 관 련 법 규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

- 일부 자치구에서 조례개정 준비중임

□ 검 토 의 견

- 본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를 보면
 - 2005. 1. 14 개정, 시행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법 취지에 맞게 조례의 기본적인 사항을 개정하려는 법정사항입니다.

○ 본 조례 구성을 보면

-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부합되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내용의 일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과 관련된 조항이 누락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 우선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추가)하고자 「제4조의 2(심의사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표준지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6.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추가(신설)하며
- 제6조 회의 및 의결과 관련 가부동수일 경우 회의 의결 원칙상 부결이므로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회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회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 제11조 수당지급과 관련 「영등포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추가(신설) 및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 별첨)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 5. 6

보고자 : 이 남 식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수 정 의 건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4조(위원장등 직무)	제4조(위원장등 직무) 〈신 설〉	제4조(위원장등 직무) 제4조의2(심의사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표준지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6.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6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96.11.16>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1996.11.16></p>	<p>제6조(현행과 같음)</p>	<p>제6조(회의 및 의결) ①..... ②..... 의결한다.</p>
<p>제11조(수당지급)자치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수당지급)영등포구의</p>	<p>제11조(수당지급)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